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78
----------	-------

발의연월일 : 2025. 11. 4.

발 의 자 : 박희승 · 박해철 · 박홍배
백선희 · 서영교 · 오세희
위성곤 · 윤후덕 · 이건태
이학영 · 한정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상의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인격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민법 총칙에 인격권을 명문화하고자 함. 동시에 인격권은 그 성질상 침해된 후의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과 같은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도록 하였음.

나아가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자 함. 판례는 1990년대부터 사람의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음. 그러나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하급심 판례가 인격표지영리권의 인정 여부, 법적 성격 등에 대해 엇갈리는 등 문제가 있음. 또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의 발달로 인해 유명인이 아니라더라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민법에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권리를 창설하고 성명, 초상 등의 인격표지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와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인격권) ①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3(성명·초상 등의 영리적 이용) ①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이하 “인격표지영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③ 인격표지영리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권리는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되어 30년 동안 존속한다.

⑥ 제751조의2의 규정은 인격표지영리권에 준용한다.

제751조제1항 중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 상고통”을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으로 한다.

제7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1조의2(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피해자는 침해의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피해자는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격표지영리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인격권) ① 사람은 생</u> <u>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u> <u>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u> <u>像), 성명, 음성, 대화, 개인정</u> <u>보 및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u> <u>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u> <u>한다)를 가진다.</u> <u>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u> <u>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u> <u>여서는 아니 된다.</u>
<u><신 설></u>	<u>제3조의3(인격표지영리권) ① 사</u> <u>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u> <u>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u> <u>로 이용할 권리(이하 “인격표</u> <u>지영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u> <u>② 제1항의 인격표지영리권은</u> <u>양도할 수 없다.</u> <u>③ 인격표지영리권을 가진 자</u> <u>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u> <u>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u> <u>수 있다. 다만, 중대한 사유가</u> <u>있는 경우에는 허락을 철회할</u> <u>수 있다.</u>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u>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u> ② (생략) <u><신설></u>	④ <u>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u> ⑤ <u>제1항의 권리는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되어 30년 동안 존속한다.</u> ⑥ <u>제751조의2의 규정은 인격표지영리권에 준용한다.</u>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u>타인에게 정신상 고통-----</u> ----- ----- -----. ② (현행과 같음) 제751조의2(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 ① <u>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u> ② <u>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피해자는 침해의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가</u>
--	---

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피해자는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